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44호
2026. 9. 18.(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12)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공고 제2026-970호) 1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71호)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72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73호) ... 18
-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6-974호) 3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75호)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976호) ... 49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81호) 56
- 공인 등록·폐기 공고(공고 제2026-982호) 57
- 2026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근로자 추가 선발 모집공고(공고 제2026-984호) 5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986호) 65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26-992호) 72

공 략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제 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공고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17. (30일간)
- 공고대상자 및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등록내역(기술인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덕구 제2013-01호	(주)대전공업사 (전준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86 (상서동)	확인검사 분야	신혁진 남선우	<u>정덕교</u> <u>채수윤</u>

※ 최초등록일: 2013. 8. 1.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환경과(☎042-608-6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9. 18. ~ 10. 2.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10. 19.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김*현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26, 3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유*주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 35-12, 3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이*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 31*동 1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김*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11, 10*동 1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수습 관련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덕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 9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에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의

- 재난 현장 대응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다. 대책본부회의 위원에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 라. 관계 법령 조문체계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3조제2호).
- 마.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7).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
(전화: 042-608-5342, FAX: 042-608-3849, E-mail: kjk41879@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담당자 길기중(전화: 042-608-53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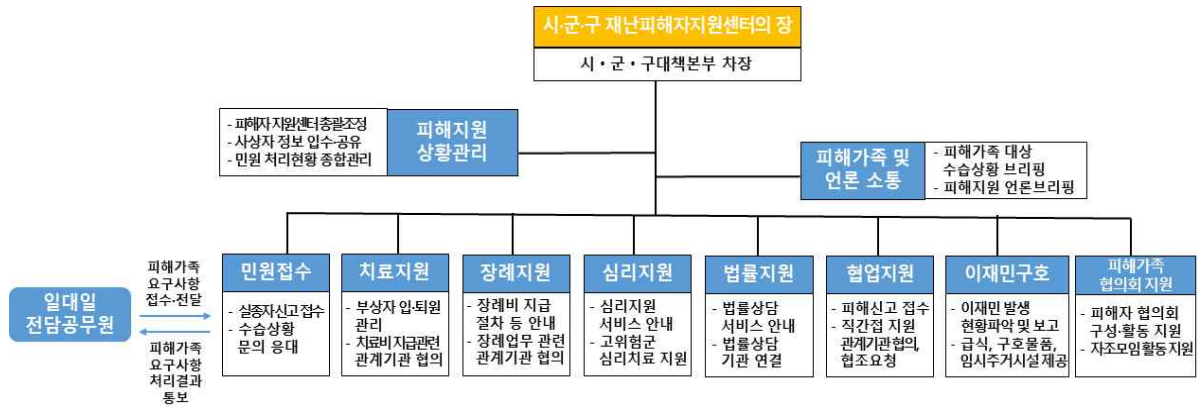
[별표 7]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9조의2제4항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 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u> <u>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u> <u>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u> <u>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u> <u>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u> <u>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u> <u>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u> <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u> <u>다.</u> <u>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u> <u>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u> <u>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u> <u>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u> <u>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대책본</u> <u>부의 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u> <u>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u> <u>요청할 수 있다.</u> <u>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u> <u>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u> <u>업무를 총괄한다.</u> <u>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u> <u>제는 별표 7과 같다.</u> <u>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u>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② (생략)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신설>

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구성할 수 있고-----

-----.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

3. 4. (생략)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u>관할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가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u> <u><신설></u> 4. 5. (생략) ③ ④ (생략)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u>제5항</u>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u>원부서의 장</u> 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u> 4. <u>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u>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재난수습 홍보)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6항</u>-----
---	---

지역사고수습본부 3. ~ 6. (생략)	----- 3. ~ 6.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⑦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 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

(전화: 042-608-5342, FAX: 042-608-3849, E-mail: kjk41879@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담당자 길기중(전화: 042-608-53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하여”를 “거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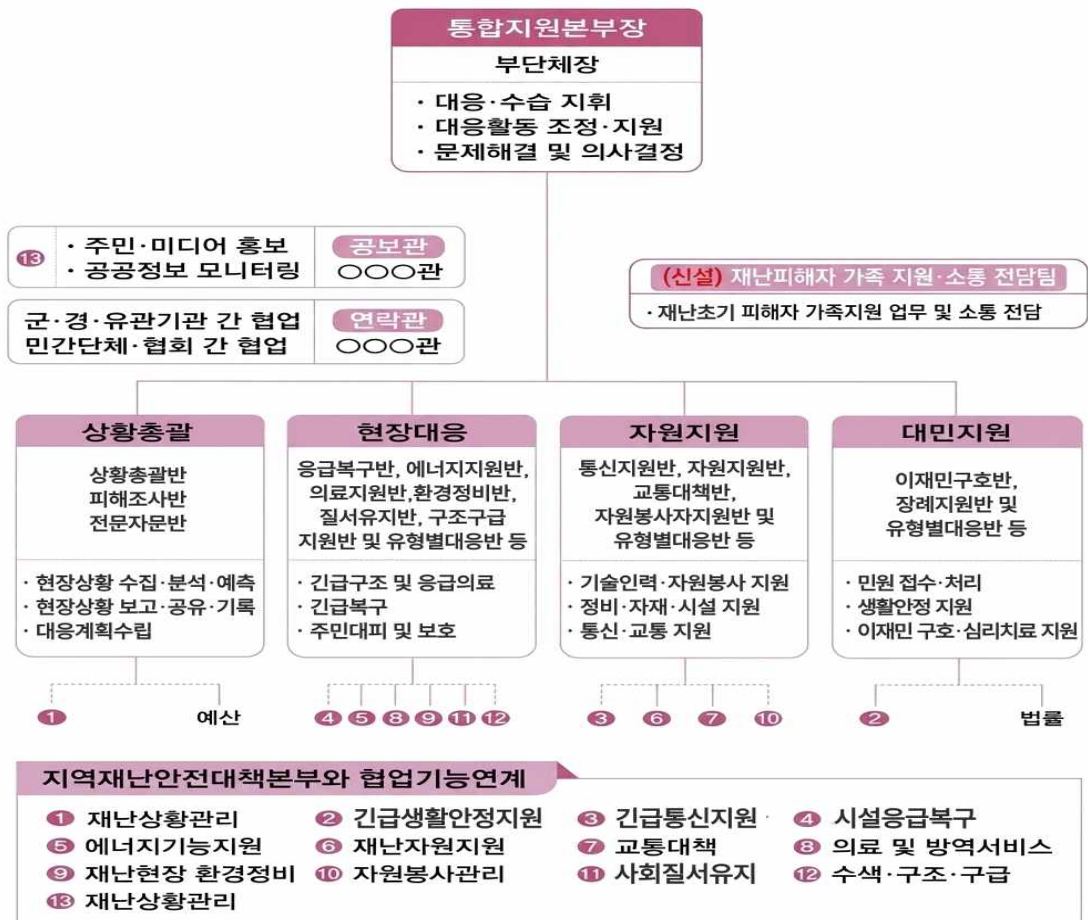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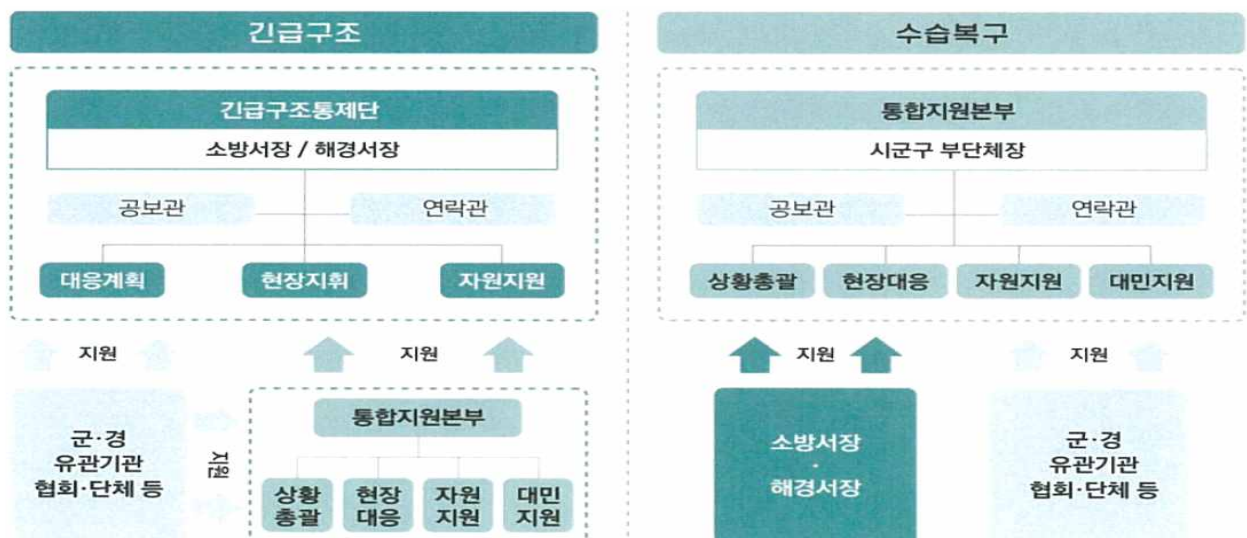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단 체 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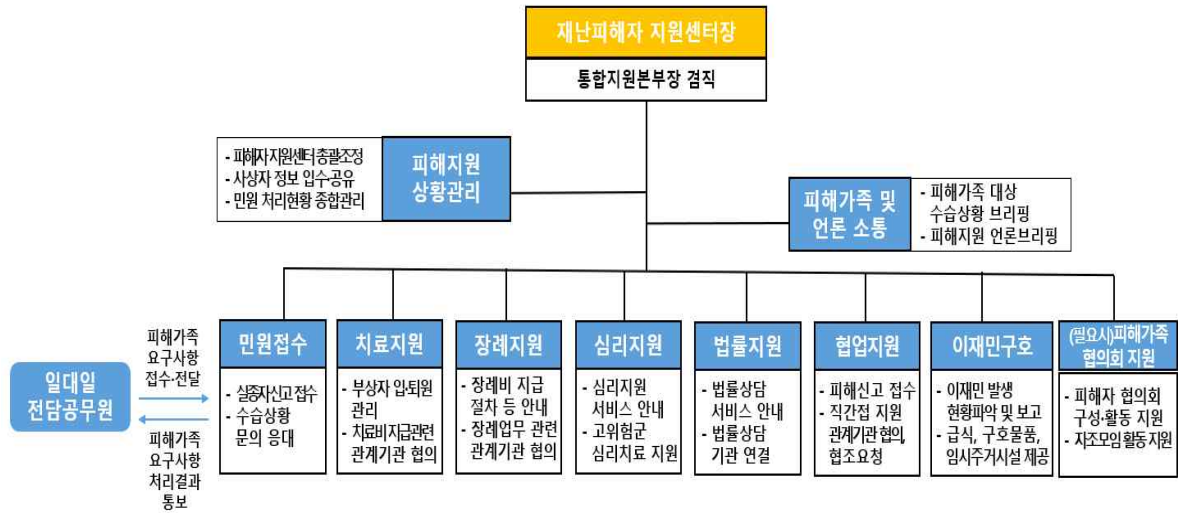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제5항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 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u>통하여</u>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 ----- ----- ----- <u>거쳐</u> ----- ----- ----- ----- -----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등 통보) ① (생략)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계획 등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u>공보관</u>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u> ----- ----- ----- ----- -----.

③ (생략)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

--.

1. 2. (현행과 같음)

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 소 <u>지원 협조</u> 5. (생 략)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 <u>신망 확보</u>	3. ----- -- <u>지원</u> 4. (현행 제5호와 같음)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 <u>신망 확보</u>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법동 210-8)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주차장명	위 치	면 수	비 고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법동 210-8	12	09:00 ~ 18:00 (월~토 유료 운영) (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

※ 시행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운영방법: 관리위탁(법동시장 상인회)
5. 유료화 운영시기: 2026년 10월 13일 09:00~
※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차요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초과 후 매10분 이내			주 간	야 간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18:00~ 다음날 09:00무료

7. 공고방법: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8.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9.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9 18. ~ 2026. 10. 7. / 20일간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4522, 메일: backdal@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6. 9. 18.(금) ~ 2026. 10. 7.(수)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2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관사 등급제 폐지 및 직무 관련성 중심의 사용기준을 정비하며,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재산 및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27조제6항).

나. 관사의 정의를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으로 정비함(안 제49조).

- 다. 1급·2급·3급 관사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무수행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관사 사용대상을 정비함(안 제50조).
- 라. 관사 사용허가 절차 및 관사 관리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 마.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사 운영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공개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55조의2).
- 바. 관사 사용료 면제 대상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56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042-608-5301, FAX: 042-608-3829, E-mail: hwaeun77@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화은(전화: 042-608-5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사용대상)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보호 또는 재난·재해 대응 등 직무의 특성상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원
2.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상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1조 본문 중 “관사의 사용은”을 “관사를 사용하려는 소속 직원은”으로,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사용자의 성명 및 사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관사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 관리”를 “운영·관리”로 한다.

1. 퇴직, 전보 등으로 관사 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

제55조의 제목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관사 운영비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사운영비”를 “관사 운영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에서 이를”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관사 운영현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관사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제1호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 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 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 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 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 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을 말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 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소유하거 나 임차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 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관사의 사용대상)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보호 또는 재난· 재해 대응 등 직무의 특성상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원 2.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거지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 원

제51조(사용허가) <u>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u>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u>공무원</u>(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u>제공과금</u>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u>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u>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3. 그 밖에 <u>구청장이 직무수행상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u> 제51조(사용허가) <u>관사를 사용하는 소속 직원은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u> 제52조(사용책임) ----- -- <u>소속 직원</u>-----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제세공과금</u>-----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작성·관리) <u>구청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사용자의 성명 및 사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관사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u>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	---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생략)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
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
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
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
친 때

4. (생략)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
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
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
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

1. 퇴직, 전보 등으로 관사 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

2. (현행과 같음)

3. -----

-- 운영·관리-----

4. (현행과 같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운영비-----
-----.

---- 예산의 범위에서 ----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비

<삭 제>

4. -----

-- 경비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신 설>

제55조의2(관사 운영현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관사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 운영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u>항</u>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제56조(사용료의 면제) -----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	-----
다.	--.
1. 사용대상 <u>공무원</u> 이 직접 사	1. ----- <u>소속 직원</u> -----
용하는 경우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초지법 제18조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

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액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 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사의 사용대상에 관한 용어 및 사용허가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사 사용대상에 관한 용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함(안 제34조제1항).

나. 관사 사용허가 신청의 근거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전화: 042-608-5301, FAX: 042-608-3829, E-mail: hwaeun7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화은(전화: 042-608-5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조례 제51조”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u>사용대상공 무원이</u>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u>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 ----- <u>사용대상 소 속 직원이</u> ----- ---. <u><단서 삭제></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 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 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 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 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u>조례 제51조</u> ----- ----- ----- ----- 5 <u>일 전</u> ----- <u>따</u> <u>른</u> ----- -----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 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공고내용

업 종	업소명	위반자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휴 게 음식점	카페나눔	임*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7번길 8, 1층 (석봉동)	2025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100,000원

4. 고지사항

-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상기 위반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카페나눔은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하오니 2026. 10. 12까지 납입고지서를 참고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6903. 끝.

공인 등록·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인 등록·폐기 일자: 2026. 9. 18.(금)
2. 공인 등록·폐기 내역: (등록) 1개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변경일자	사 유
1	공 인 등 록	대덕구옥외광고발전기금 수 입 금 출 납 원 인	훈민정음체 / 1.8cm 정방형		2026.9.18.	공인 신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2026-984호

2026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근로자 추가 선발 모집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시급직)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선발인원: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4명(일 2시간)

2. 자격기준 및 임무

가. 자격기준

1) 근로자 공통

① 공고일 기간 내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②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자

※ 중증 장애 또는 중증 환자로 청소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외

※ 휠체어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자, 고혈압, 당뇨병, 폐질환, 심질환자 등 단, 고혈압 및 당뇨병의 경우 처방을 받아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나. 임무

1) 근로자 공통

① 청소방법: 1일 2~3시간 수시 청소 / 10월~12월 2시간

↳ 2시간 근무 시 9:00~10:00, 14:00~15:00 청소

※ 세부 근무시간 변경 원할 경우, 사전 협의 후 변경 가능

② 화장실 내·외 청소 및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휴지통 등) 비치

③ 소·대변기, 세면기 등 위생 설비 막힘 즉시 수선

④ 구청 행사 시 임시 설치되는 공원 내 간이화장실의 청소

- ⑤ 화장실 주변 청소, 낙엽 제거 등 청결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⑥ 관리책임자 표지판 및 일일점검표 갱신
- ⑦ 타 근무자 휴무에 따른 휴무 근로자 공중화장실 상호 대체근로 실시
예시) 월, 화 휴무 근로자와 수, 목 휴무 근로자 간 상호 대체근로 수행

다. 근무장소

- 한마음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 법동 191-2번지
- 법동소류지(1) 공중화장실 / 법동 140-1번지
- 여태말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 목상동 174번지
- 오정대화근린공원(1) 공중화장실 / 대화동 254-56번지

3. 지원신청 및 선발 절차

가. 지원신청

- ① 접수처: 대덕구청 공원녹지과(별관 4층)
- ②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로 희망자 본인이 직접 접수
 - ※ 전화, 우편, FAX 및 대리 접수 등 불가
 - ※ 공원녹지과에서 동일 기간에 모집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나. 선발절차

- ①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② 결격사유로 인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
 - ※ 동점자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2조제3항에 의거, 취약계층·세대주 여부·경력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 단, 권역·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희망 지원자가 적은 지역의 경우 예외를 둠
 - ※ 단, 배정된 청소 지역 사역 거부 시 중도 탈락할 수 있음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2조제1항 <채용시험 가점기준> 반영

4.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필수) / 접수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

- 1) 참여신청서(구청 홈페이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2) 주민등록등본(최근 1년 이내 발급) 1부.
- 3) 건강진단서(모집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1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 동의서 1부.
- 5) 신분증 사본 1부.

나. 제출서류(선택)

- 1)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공원 유지관리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분야 제외)
- 2)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4) 관련분야 유공 표창장 1부

5. 선발 일정 및 장소

가. 선발 일정

- 1)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9. 22.(화)
- 2) 접수기간: 2026. 9. 21.(월) ~ 2026. 9. 22.(화) 10:00~17:00
- 3) 서류심사: 2026. 9. 23.(수) 15:00 이후 결과 개별 문자 통보
- 4) 면접일시: 2026. 9. 28.(월) 14:00 ~ 17:00 예정
- 5) 발 표 일: 2026. 9. 29.(화) 15:00 이후 결과 개별 문자 통보

나. 교부 및 접수 장소

- 1) 교 부 처: 대덕구청 별관 4층 공원녹지과(042-608-5134), 동 행정복지센터
- 2) 접 수 처: 대덕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42-608-5134) / 별관 4층

6. 근로자의 처우

가. 근무형태 / 2026년 대덕구 생활임금(시급) 12,050원

- 1) 주 5일제(토·일 근무, 주중 2일 휴무) / 1일 2~3시간 근무기준
- 3) 약 482,000원/월(1일 2시간 근무), 10월~12월(3개월)
※ 한 달은 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나. 기타사항

- 1) 근로 및 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무단결근, 민원 야기, 청소 불량 등 불성실 근로자는 계약기간 도래 전에도 중도 해약함
- 2)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 3) 공개채용의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인 것으로 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음
- 4) 이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5)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 및 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 6)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접수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와 심사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7)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6 서식)하는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최종합격자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제출된 타인의 서류와 심사내용은 반환하거나 일체 공개하지 않음

기간제근로자(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작성하지 말것	근무형태	일 2~3시간		
성명		(남 , 여)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 전화번호	- -	
취약계층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호수급자 ☐ *증명자료 제출 필요	세대주	해당 ☐ 해당없음 ☐	세대인원	명
화장실분야 종사경력	() 년 () 개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필요				
유공자	*유공 자격 증명 자료 제출 필요				
청소 가능 구역	- 한마음어린이공원, 범동소류지(1), 여태말어린이공원, 오정대화근린공원(1) 중 청소 가능한 공원 기입 1. 2. *청소 가능 구역 기재 후, 배치 거부 시 결격 사유가 됨				
이동수단 소유 여부 *서류접수에 반영, 차량등록증 제출 필요		자동차, 오토바이, 도보, 기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6년 9월 일

대덕구청장 귀하

응 시 자 각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선발 실기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체력검정 응시를 포기해야 함을 고지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력검정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실기검정 진행 중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 등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불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6. 9. 18. ~ 2026. 10. 1. (14일간)
4. 기타
 -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어르신장애인과(☎042-608-6805,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이**	대전광역시 동구 솔랑1길 40, ***호(삼성동, 호성빌라)	15나42**	2026-06-28 07:41:18	송촌동 494-1	2026-07-1 0	2026-07-21	폐문부재
2	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3길 35-**	37우10**	2026-06-28 08:22:30	법동 440-4	2026-07-1 0	2026-07-21	폐문부재
3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 ***동 ****호(신탄진동, 신탄진다가온)	311조75**	2026-06-29 01:23:56	신탄진동 884	2026-07-1 0	2026-07-20	폐문부재
4	이**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54번길 88, B동 ***호(갈마동)	49부97**	2026-06-29 01:20:19	신탄진동 884	2026-07-1 0	2026-07-2 1	폐문부재
5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51, ***동 ****호(법동, 그린타운아파트)	61버97**	2026-06-30 17:20:50	송촌동 560-6	2026-07-1 0	2026-07-20	폐문부재
6	주**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1, *동 ***호(중촌동, 시영아파트)	대전80배43* *	2026-07-02 16:42:05	송촌동 580	2026-07-1 0	2026-07-20	폐문부재
7	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동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159라29**	2026-07-03 16:38:22	송촌동 494-1	2026-07-1 0	2026-07-20	폐문부재
8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 2, ***동 ****호(비래동, 금성백조아파트)	40두12**	2026-07-04 19:32:50	중리동 462	2026-07-1 0	2026-07-20	폐문부재
9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 (법동)	347버45**	2026-07-06 21:19:30	법동 214	2026-07-1 6	2026-07-2 4	폐문부재
10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목상동)	63오61**	2026-07-08 19:57:34	목상동 871	2026-07-1 6	2026-07-24	폐문부재
11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31번길 53, *동 ***호(비래동, 평화맨션)	383주58**	2026-07-09 06:45:04	비래동 109-1	2026-07-1 6	2026-07-2 4	폐문부재
12	이**(99%), 『김**(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79, ***동 ****호(읍내동, 백송아파트)	399저60**	2026-07-11 11:02:03	오정동 44-1	2026-07-1 6	2026-07-24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3	홍**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25다길 33-7, ***호(용문동)	서울84사20* *	2026-07-12 13:50:38	중리동 275-30	2026-07-1 6	2026-07-27	폐문부재
14	연**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31번길 58, ***호(탄방동, 비전타운	34러26**	2026-07-14 09:18:54	대청로 43	2026-07-1 6	2026-07-2 7	폐문부재
15	정**(99) , 『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146번길 2, ***호(봉명동, 에이스타운*차)	43로77**	2026-07-14 21:32:37	신탄진동 771	2026-07-2 3	2026-08-03	폐문부재
16	오**(1%) , 『오**(99)』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03, ***동 ***호(광려천벽산블루밍아파트)	386부34**	2026-07-16 06:44:29	비래동 527	2026-07-2 3	2026-07-31	폐문부재
17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29거08**	2026-07-18 12:58:40	석봉동 770	2026-07-2 3	2026-07-30	폐문부재
1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86번길 14, *층(비래동)	41라49**	2026-07-18 19:45:14	비래동 118-3	2026-07-2 3	2026-07-30	폐문부재
19	주**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30, ***동 ****호(낭월동, 남대전 이편한세상 아파트)	53무31**	2026-07-19 12:38:08	중리동 372-30	2026-07-2 3	2026-08-03	폐문부재
20	황**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화엄로 539-**	102두13**	2026-07-22 12:36:21	중리동 237-4	2026-07-2 9	2026-08-10	폐문부재
2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 ***동 ***호(신탄진동, 신탄진다가온)	142마32**	2026-07-24 00:04:55	신탄진동 884	2026-07-2 9	2026-08-05	폐문부재
22	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동 ***호(월평동, 주공아파트)	47부37**	2026-07-24 13:59:51	신탄진동 143-13	2026-07-2 9	2026-08-06	폐문부재
23	김**(50) , 『김** (50%)』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1길 **	40저76**	2026-07-24 20:34:55	신탄진동 771	2026-07-2 9	2026-08-07	폐문부재
24	S**IROV A ****LA K*****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효근3길 26-*	43거48**	2026-06-25 17:52:19	오정동 753	2026-08-0 5	2026-08-13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25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1노10**	2026-05-29 21:28:57	송촌동 459-1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26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동 ***호(법동,삼정하이츠)	225호30**	2026-05-12 17:38:28	법동 283-1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27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5번길 *(송 촌동)	325부34**	2026-05-26 14:28:23	송촌동 460-6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28	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22-8, ***호(역삼동, 오크빌)	35너66**	2026-06-09 21:21:41	송촌동 459-1	2026-08-0 5	2026-08-07	수취인불 명
29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25번길 67, ***호(비래동)	59오39**	2026-05-28 17:11:07	비래동 523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30	장**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92, ***동 *층 ***호(가양동, 아침마을 아파트)	88로63**	2026-05-28 15:36:57	중리동 418	2026-08-0 5	2026-08-1 4	폐문부재
31	조**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동 ***호(세교동,부영원앙아파트)	231하88**	2026-05-11 14:28:11	송촌동 292-5	2026-08-0 5	2026-08-07	이사불명
32	주**사 **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25번길 44,***호(갈마동)	272수56**	2026-05-23 12:35:20	오정동 44-1	2026-08-0 5	2026-08-13	폐문부재
33	C** **U DU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3번길 50-10, 금여울 ***호(홍도동)	13가28**	2026-05-07 11:29:47	중리동 237-4	2026-08-0 5	2026-08-14	폐문부재
34	강**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66-1, *층(삼성동)	16수51**	2026-05-22 15:45:29	법동 283-1	2026-08-0 5	2026-08-1 4	폐문부재
35	박**	대구광역시 유성구 구죽로48번길 41,***호(송강동)	181허68**	2026-05-17 12:05:29	대화동 490-2	2026-08-0 5	2026-08-14	폐문부재
36	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09,****호(봉명동,하이랜드*차아파트)	143호12**	2026-05-08 01:29:37	중리동 418	2026-08-0 5	2026-08-13	폐문부재
3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동 ***호(법동,삼정하이츠)	151어55**	2026-05-10 17:30:07	비래동 4-8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8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04번길 12-1, ***호(신탄진동, 은혜빌리지)	139부84**	2026-05-24 19:43:39	석봉동 205-13	2026-08-0 5	2026-08-0 7	수취인불 명
39	(**에스** **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북로 85-7, ***호(용계동, 캠퍼스타워)	106호40**	2026-04-12 18:57:04	중리동 207-1	2026-08-0 5	2026-08-14	폐문부재
40	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10번길 60, ***호(신탄진동)	68나84**	2026-04-28 19:31:20	신탄진동 743	2026-08-0 5	2026-08-14	폐문부재
41	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1길 **	83어66**	2026-04-27 08:42:25	송촌동 292-5	2026-08-0 5	2026-08-1 3	폐문부재
42	노**(99)『남**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21, ***동 ****호(성성동, 천안시티자이)	25누18**	2026-04-19 19:11:33	상서동 373-21	2026-08-0 5	2026-08-13	폐문부재
43	박**(99)『박** (1%)』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47-13, ***호(관저동)	11두79**	2026-04-04 15:11:51	중리동 101-1	2026-08-0 5	2026-08-13	폐문부재
44	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54번길 150, ***호(구암동, 영선주택)	84저61**	2026-03-27 09:29:10	석봉동 770	2026-08-0 5	2026-08-13	폐문부재
45	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동 ***호(평촌동, 행복한마을아파트)	65우93**	2026-03-20 15:57:56	신탄진동 141-28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46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동 ****호(법동, 보람아파트)	26누36**	2026-04-15 23:24:41	법동 284-1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47	홍**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63, ***동 ***호(신탄진동, 새여울아파트)	18나70**	2026-04-01 18:01:08	석봉동 770	2026-08-0 5	2026-08-12	폐문부재
48	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1번길 11-28, ***호(내동)	15버43**	2026-07-23 18:03:01	대화동 568-1	2026-08-1 0	2026-08-19	폐문부재
49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동 ****호(어은동, 한빛아파트)	29나73**	2026-07-28 11:50:44	오정동 44-1	2026-08-1 0	2026-08-20	폐문부재
50	권**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9, *동 ****호(선화동, 선화II 참좋은아파트)	244더41**	2026-07-21 14:25:28	비래동 527	2026-08-1 0	2026-08-19	폐문부재
51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01, ***호(신림동)	823무24**	2026-07-30 19:00:59	미호동 57-1	2026-08-1 0	2026-08-19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52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39구04**	2026-07-31 16:56:23	석봉동 770	2026-08-1 0	2026-08-18	폐문부재
53	김**(99%),『이**(1%)』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지1길 4-*	85우73**	2026-08-02 13:10:30	송촌동 292-3	2026-08-1 0	2026-08-19	폐문부재
54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68번길 ***(평촌동)	308조59**	2026-07-27 16:05:29	상서동 833-6	2026-08-1 0	2026-08-18	폐문부재
55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7번길 20, D동 ***호(비래동)	83다95**	2026-07-04 07:14:44	비래동 527	2026-09-0 2	2026-09-09	폐문부재
56	박**(99%),『박**(1%)』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3, ***호(송촌동)	327구28**	2026-07-17 22:15:16	송촌동 459-4	2026-09-0 2	2026-09-09	폐문부재
57	오**(1%),『오**(99%)』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03, ***동 ***호(광려천벽산블루밍아파트)	386부34**	2026-07-16 06:44:29	비래동 527	2026-09-0 2	2026-09-10	폐문부재
58	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동 ***호(월평동, 주공아파트)	47부37**	2026-07-24 13:59:51	신탄진동 143-13	2026-09-0 2	2026-09-10	폐문부재
59	이**	대전광역시 동구 솔랑1길 40, ***호(삼성동, 호성빌라)	15나42**	2026-06-28 07:41:18	송촌동 494-1	2026-09-0 2	2026-09-11	폐문부재
60	이**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54번길 88, B동 ***호(갈마동)	49부97**	2026-06-29 01:20:19	신탄진동 884	2026-09-0 2	2026-09-10	폐문부재
61	정**(99%),『정**(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146번길 2, ***호(봉명동, 에이스타운*차)	43로77**	2026-07-14 21:32:37	신탄진동 771	2026-09-0 2	2026-09-11	폐문부재
62	황**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화업로 539-**	102두13**	2026-07-22 12:36:21	중리동 237-4	2026-09-0 2	2026-09-03	수취인불명
63	S**IROV A ***** K***** NA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효근3길 26-*	43거48**	2026-06-25 17:52:19	오정동 753	2026-09-0 2	2026-09-10	폐문부재
64	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23번길 4, ***호(송촌동, 흥진로알아파트)	292다97**	2026-06-08 07:39:57	비래동 3-2	2026-09-0 2	2026-09-1 0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65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동 ***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1노10**	2026-05-29 21:28:57	송촌동 459-1	2026-09-0 2	2026-09-09	폐문부재
66	김**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3번길 7, ***호(홍도동)	225호30**	2026-05-12 17:38:28	법동 283-1	2026-09-0 2	2026-09-1 1	폐문부재
67	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22-8, ***호(역삼동, 오크빌)	35너66**	2026-06-09 21:21:41	송촌동 459-1	2026-09-0 2	2026-09-04	수취인불 명
68	박**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열두봉길 **	83우41**	2026-06-07 20:55:37	비래동 524	2026-09-0 2	2026-09-11	폐문부재
69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25번길 67, ***호(비래동)	59오39**	2026-05-28 17:11:07	비래동 523	2026-09-0 2	2026-09-09	폐문부재
70	조**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동 ***호(세교동,부영원앙아파트)	231하88**	2026-05-11 14:28:11	송촌동 292-5	2026-09-0 2	2026-09-04	이사불명
71	B**SIN P*****RA VIC***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동 ***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65두55**	2026-05-26 01:18:58	석봉동 770	2026-09-0 3	2026-09-10	폐문부재
72	C** H** D*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3번길 50-10, 금여울 ***호(홍도동)	13가28**	2026-05-07 11:29:47	중리동 237-4	2026-09-0 3	2026-09-14	폐문부재
73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48번길 41,***호(송강동)	181허68**	2026-05-17 12:05:29	대화동 490-2	2026-09-0 3	2026-09-14	폐문부재
74	심**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23-3,*층 ***호(입석동,대경빌라)	143호12**	2026-05-08 01:29:37	중리동 418	2026-09-0 3	2026-09-11	폐문부재
75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0,**동 ***호(법동,삼정하이츠)	151어55**	2026-05-10 17:30:07	비래동 4-8	2026-09-0 3	2026-09-1 0	폐문부재
76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04번길 12-1, ***호(신탄진동, 은혜빌리지)	139부84**	2026-05-24 19:43:39	석봉동 205-13	2026-09-0 3	2026-09-10	폐문부재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 업 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도로사업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3. 열람기간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6. 9. 21. ~ 2026. 10. 8.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042-608-510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등의 표시(붙임 참조)
6. 기 타: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